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34호로 2024년 11월 8일 우경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민원실의 설치(안 제4조)

라.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마. 민원실 연장 운영(안 제6조)

바.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1.11.~2024.11.16./5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區)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서는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에서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임을 규정함. 아울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개정되면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¹⁾이 신설되었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²⁾에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 구(區) “민원실”은 본청 민원실,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 민원실로 볼 수 있고, “현장민원실”은 여의동 현장민원실이 있으며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민원실	세부내용
본청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오후 6시~오후 8시) -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1층 보건민원실 · 보건소 3층 위생민원실

1)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2) 강남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동주민센터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18개 동 동주민센터 민원실 ※ 여의도 현장민원실 운영
-----------	----------------------------------------------------------------------------------------------------------------------------------------------------------------------------------------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보고 있어, 추후 토요일 또한 민원실을 운영³⁾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근무시간 등)⁴⁾을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안 제정 후 세 부지침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토요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3) 실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민원실 운영 중임 (오전 9시 ~ 오후 12시)

4)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 고 자 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